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1403
----------	------

제출년월일 : 2023년 10월 1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서울을 대표할 새로운 브랜드가 선정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브랜드를 교체하고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상징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서울 브랜드를 **SEOUL·U** 에서 **SEOUL SOUL** 로 변경 (안 제3조제2호 별표2)

- 조례 개정으로 신규 서울브랜드를 공식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 마련

나.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안 제5조제3항)

-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24.12.31)을 5년 연장('29.12.31)하여
위촉직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브랜드 정책에 대한 자문 기능 지속 수행

다.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마련 (안 제6조제3항)

- 서울브랜드총괄관의 국내외 활동에 따른 여비 지급 근거 규정 마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해당사항 없음

나. 예산조치 : 협의 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 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 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해당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해당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 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협의사항:
협의 완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3. 08. 17. ~ 09. 06.)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 작성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현미희(☎2133-6194)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전단 중 “2024년 12월 31일”을 “2029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있으며, 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수당을”을 “수당 및 여비를”로, “있으며, 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를 “있다”로 한다.

제9조제4항제4호 중 “제7조제4항”을 “제8조제4항”으로 한다.

별표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2] 상징물의 종류(제3조제2호 관련)

1. 브랜드

(1) 영문 기본형






(2) 국문 기본형



2. 브랜드의 의미

(1) 영문 타이포 디자인을 중심으로 서울에 대한 다양한 마음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메타포 (metaphor, 간접적이고 암시적인 은유)를 이미지화(픽토그램)함

-  (LOVE) : 서울을 향한 마음이 모여 사랑으로 가득 찬 서울
-  (INSPIRE) :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도시 서울
-  (FUN) : 즐겁고 매력으로 가득한 매력 도시 서울

(2) 사람들의 다양한 마음이 모여 조화를 이루는 매력 있는 도시 서울을 상징

3. 색상





BLUE
RGB R0 G130 B255
HEX 0082ff
CMYK C90 M20 Y0 K0
Pantone 2174C

GREEN
RGB R0 G215 B120
HEX 00d778
CMYK C70 M0 Y70 K0
Pantone 7479C

YELLOW
RGB R255 G180 B0
HEX fbf13
CMYK C0 M30 Y90 K0
Pantone 7548C

PINK
RGB R255 G10 B115
HEX ff0a73
CMYK C0 M90 Y27 K0
Pantone 2039C

4. 연혁

구 분	선정 연도
	2002
	2006
	2008
	2015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생 략)</p> <p>④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u>2024년 12월 31일까지</u>로 한다.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p>	<p>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u>2029년 12월 31일</u>-----.</p>
<p>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생 략)</p> <p>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서울브랜드총괄관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u>구체적인 자격기준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1. ~ 3. (생 략)</p> <p>③ ~ ⑥ (생 략)</p> <p>⑦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서울브랜드총괄관에게 <u>수당을</u>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u>그 밖의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u></p>	<p>제6조(서울브랜드총괄관의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있다.</p> <p>1. ~ 3. (현행과 같음)</p> <p>③ ~ ⑥ (현행과 같음)</p> <p>⑦ ----- <u>수당 및 여비를</u> ----- 있다.</p>
<p>제9조(사용료) ① ~ ③ (생 략)</p> <p>④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p> <p>1. ~ 3. (생 략)</p>	<p>제9조(사용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p> <p>1. ~ 3. (현행과 같음)</p>

4. 제7조제4항의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별표 2] 상징물의 사용(제8조제2호 관련) <개정: 2018.5.19.>

1. 브랜드

(1) 영문 기본형



(2) 국문 기본형



2. 브랜드의 의미




(1) 서울의 정체성 "꿈", "열정", "역동"을 언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나]와 [너]가 서울을 사이에 두고 연결된다는 의미를 긍정(가운데 길)으로 표현. 나와 당신이 이어지며, 함께 움직이는 서울을 부하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서울이 있음을 의미

(2) SEOUL의 두 'S'를 열정(붉은 색)과 역동(푸른 색)을 상징하며 열정과 역동이 공존함을 나타냄. 'SEOUL'의 영문 'O'를 세 반달의 '이름'으로 대체하여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표현

3. 색상



4. 연혁

구분	연도
	2002
	2006
	2008

4. 제8조제4항

[별표 2] 상징물의 사용(제8조제2호 관련)

1. 브랜드

(1) 영문 기본형



(2) 국문 기본형



2. 브랜드의 의미

(1) 높은 자아로 디자인을 완성으로 서울의 다한 다양한 모습을 상징하는 구체적인 은유표(metaphor) 개념적이고 상징적인 문화를 의미하며(비로그랄함)

- (LOVE) : 서울을 향한 마음이 모두 사랑으로 가득 찬 서울
- (DIVERSITY) : 다채롭고 새로운 경험을 주는 도시 서울
- (SMILE) : 즐겁고 행복으로 가득한 매력 도시 서울

(2) 사랑들의 다양한 마음이 모두 조화를 이루는 매력 있는 도시 서울을 상징

3. 색상




4. 연혁

구분	연도
	2002
	2006
	2008
	2015

서울특별시 상징물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 브랜드를 I·SEOUL·U 에서  로 변경 (안 제3조제2호 별표2)
- 서울브랜드위원회 존속기한을 5년 연장 (안 제5조제3항)
- 서울브랜드총괄관 여비 규정 마련 (안 제6조제3항)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

4. 작성자

- 홍보기획관 서울브랜드담당관 행정6급 현미희(2133-6194)